



# PwC 베트남 뉴스레터

이전가격 – 시행령  
132/2020/ND-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 
시행령 초안

# At a glance..

## 시행령 132/2020/ND-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

2024년 7월 5일, 재무부는 시행령 132에 명시된 이전가격  
규정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 
발표했습니다. 현재, 동 시행령 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 
여러 정부부처 및 다양한 기업에 광범위하게  
공개되었습니다. PwC 베트남은 향후 발전방향을 계속해서  
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



# 시행령 132를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

## 주요 사항

- 시행령 초안은 신용기관법의 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확장합니다. 신용기관에는 20%의 정관자본 지분율이 적용됩니다.
- 또한, 시행령 초안은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신용기관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신용기관 계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.
- 시행령 초안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는 제3자 대출기관 또는 보증인을 제한합니다. 대출기관, 보증인 및 신용기관이 차용자의 “관리, 통제 또는 자본출자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해당 수정조항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전에는 EBITDA 한도에 걸렸던 납세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동 시행령이 발효되면, 특수관계자 정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이상 EBITDA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의 이월도 제한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, 전년도 EBITDA 한도에 따른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제21조는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중앙은행(SBV)이 신용기관의 특수관계자(사람 및 기업)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확대합니다.
- 시행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가격 신고양식의 부록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.
- 시행령이 확정되면 2024회계연도부터의 법인세 신고에 적용됩니다.

# Contact us

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Ho Chi Minh city office



**Judith Henry**  
Partner  
[Judith.Henry@pwc.com](mailto:Judith.Henry@pwc.com)



**박준형 – 호치민 사무실**  
Senior Manager, Korean CPA  
+84 (28) 3823 0796 Ext. 4611  
[park.junhyung@pwc.com](mailto:park.junhyung@pwc.com)



**Nguyen Le Nhan Hoa**  
Director  
[nguyen.le.nhan.hoa@pwc.com](mailto:nguyen.le.nhan.hoa@pwc.com)



**Ngo Thanh Tin**  
Director  
[ngo.thanh.tin@pwc.com](mailto:ngo.thanh.tin@pwc.com)

## Hanoi office



**Nguyen Thi Bich Diep**  
Senior Manager  
[nguyen.thi.bich.diep@pwc.com](mailto:nguyen.thi.bich.diep@pwc.com)



**우정균 – 하노이 사무실**  
Senior Manager, Korean CPA  
+84 (24) 3946 2246 Ext. 1011  
[jung.kyun.woo@pwc.com](mailto:jung.kyun.woo@pwc.com)



[www.pwc.com/vn](http://www.pwc.com/vn)

